

論 説

2000年代 科學消防行政, 消防技術 및 現實의 인 消防力 向上方案

- 時代狀況에 副應한 組織機能 改善 및 消防力 向上方案을 中心으로 -

張 信 會*
崔 珍 錘*
李 酒 宰*
丁 國 台*

第一章 序 論

第1節 研究의 展開順序

本研究는 全6章으로 構成하였으며, 그 體制는 다음과 같다.

- (1) 第1章 序論에서는 2000年代 消防行政發展 方案을 위한 問題를 提起하고
- (2) 第2章에서는 우리나라 消防의 变遷과정을 概觀해 보았으며,
- (3) 第3章에서는 현행 消防行政組織의 1) 組織 2) 消防力 3) 消防奉仕 行政의 現황을 통하여 현실태를 分析하였다.
- (4) 나아가, 第4章에서 이에대한 問題點을 提起함으로써
- (5) 第5章에서는 2000年代 消防行政의 發展方案을 導出하였으며,
- (6) 마지막으로 第6章에서 이제까지 기술한 内容을 要約하여 結論을 맺었다.

第2節 研究의 方向

1. 2000年代 消防行政 狀況 假定

國民所得 1人當 3000\$ 時代를 맞이하여, 우리

의 살림살이 與件도 크게 달라지고 있을뿐아니라 生活環境이 급격히 多樣化 되고 있고, 이에 따르는 火災危險의 增加趨勢는 곧 이에 副應할 만한 消防力を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立證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2000年代의 消防은 바로 先進科學 消防行政을 뜻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2000年代의 消防與件은 建築物이 高層화되고 大型, 密集化 될 뿐만아니라, 油類, 電氣, 가스 등 危險物의 大量使用으로 火災樣狀이 多樣化되고 大型火災가 增加될것이며, 國民生活 水準向上으로 福祉安全에 대한 欲求가 增大되어 自律消防體制의 定着이 크게 要請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消防與件의 變化에 効率的으로 對處하기 위해서는 消防法令中에서 現實的으로 不合理的 規定을 整備하고 効率的인 豫防對策과 科學的인 鎮壓對策 및 그에 상응하는 消防力 向上에 관한 研究分析이 있어야 할것이다.

이에 우리 消防은 긴 眼目으로서 2000年代에 對備한 長期的인 消防發展 모델을 개발하여 추진해 나가야 하며, 현행 消防行政組織의 不合理點을 發掘하여 점진적으로 시정하여 時代狀況에 부응한 組織과 機能으로 개선되어야 할것이다.

* 正會員 · 全羅南道 麗水消防署 研究班

2. 研究의 目的

本 研究에서는 2000年代에 科學 消防行政이 指向하여야 할 消防行政 發展 方案으로서 1) 消防行政組織 構造上의 不合理點을 導出, 改善方案을 提示하고자 하였으며 2) 郡單位 以下 地域의 消防機關 常備化 3) 2000年代 科學 消防行政 遂行을 為한 MIS(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즉, 綜合防災情報 시스템의 採擇活用과 4) 消防公務員 名譽心 鼓吹를 為한 報勳制度制定 5) 消防行政 需要擴大에 따른 消防行政機能의 改善으로 地方自治化 時代의 住民의 福祉欲求에 副應하기 위한 消防力補強과 科學消防態勢에의 確立方案을 提示하는데 本 研究의 目的을 두었다.

第二章 우리나라의 消防行政史 概觀

1. 概 觀

1973年 최초로 守城禁火司(守城:兵曹, 禁火:漢城府에 속함)라는 王宮消防隊가 창설되었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消防官署라 할 수 있는 禁火都監으로 世宗8年(1426年)에 되어 火災를 禁하고, 길과 다리를 修理하는 일을 맡아보게 하였다.

이어, 世祖6年(1460年) 官制의 개편이 이루어져 禁火都監은 폐지되고 定員을 감하여 漢城府에 속하는 기구로 되어 34年間 存續하다가 폐지되었다.

그후 1894年 警務廳에서 消防事務를 擔當 함으로서 警察局에서 消防事務를 始作하게 되었으며, 1915年 制定公布된 朝鮮總督府令 第65號에 따라 福祉安全에 대한 義勇奉仕精神의 진작을 목적으로 각地方青年을 중심으로 民間義勇消防隊를 組織한 것이 현재 우리나라 消防의 母體가 되었다.

1925年에 현 鍾路消防署의 전신인 京城消防署가 신설되었으며, 2次大戰中에는 消防의 國防上 중요한 역할을 감안하여 住民保護의 尖兵으로서 消防은 防共, 기타 警防等 警察의 補助機關으로 多面的인 義務를 遂行하여 왔으며, 國民警防의 核心體로 運營되었다.

해방과 더불어 美軍政廳에 의하여 1946年 4月 10日字로 軍政法令 第66號로 中央과 道에 消防

廳 및 消防委員會를 設置하고 警察로부터 消防이 安全獨立하여 自治消防體制를 확립하기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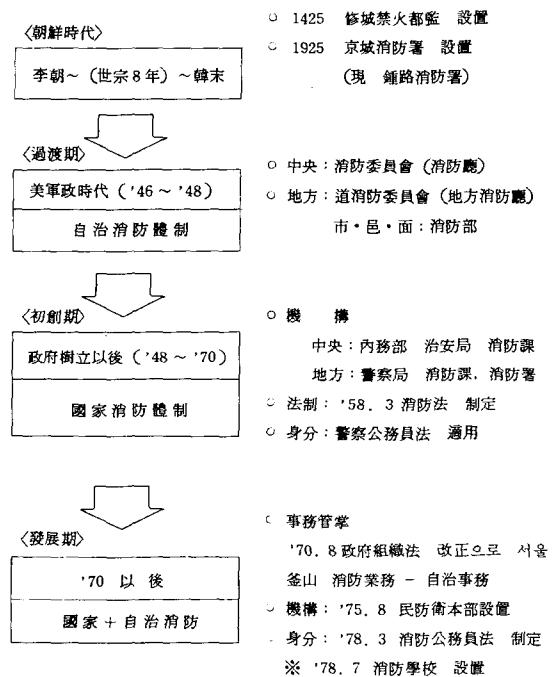
1948年 政府樹立 이후 美軍政廳 時代의 自治消防機構는 警察로 다시 引受되어 警察業務의一部가 되었다가, 그후 1970年 8月30日 政府組織改正과 함께 消防을 地方自治業務로 이관하였다.

그러나, 서울特別市와 釜山直轄市를 除外한 地方自治團體는 財政事情을 考慮하여 移轉시기가 유보되어 1972年 6月 1日 서울과 釜山에 消防本部가 新設되고, 1975年 7月23日 民防衛本部 消防局이 新設됨으로서 消防은 다시 民防衛 業務의 일분야로 자리잡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反 省

따라서 1950年代 以前의 消防業務는 法的인 根據 없이 火災의 鎮壓에만 그치는 小極의 行政에서 1958年 消防法 制定과 함께 積極의 福利消防行政으로 그 職務範圍가 擴大되었다가 1963年末부터는 消防業務의 範圍에서 風水害와 雪害部分은 削除되어 火災의 豫防 警戒 및 鎮壓活動

〈別表 2-1〉 消防沿革



〈別表 2-2〉 消防沿革表

年 度	内 謂	備 考
1397	수성금화사 운영	
1426.2.26	금화도감 설치 (병조)	최초소방기관
1460	금화도감 폐지	
1675.10	금화사설치 (임진왜란중 없어짐)	
1894	경무청에서 소방사무담당	경찰국에서 소방사무시작
1910	경무총감부 보안과 소방계 설치	
1919	경무국 보안과 (소방사무 분장)	
1925	경성소방서 신설 (현재 종로소방서)	최초소방서
1939	경무국 방호과 (소방사무분장)	
1943	경무국 경비과 (소방사무분장)	
1945	경무국 소방부 신설 (도경찰국 소방과)	미군정
1946	중앙 및 도에 소방위원회 설치	
1947	중앙 및 도에 소방정 설치	최초소방정
1948	내무부 치안국에 소방과로 축소	
1950	내무부 치안국 및 각 시도 경찰국 보안과 (서울, 경남은 소방과)	소방계로 축소
1955	내무부 치안국 경비과 방호계로 축소	
1958	소방법 제정 (법률 485 호)	
1961	치안국 소방과 승격	
1970	소방행정 지방자치 고유사무 (지방조직 법개정, 법률 2249 호), 지방자치 소방사무시작, 국가, 지방, 신분이원화	
1972	서울, 부산, 소방본부 설치	최초 소방본부
1973	지방소방공무원법 제정, 법률 제 2502 호	
1975	시, 군 소방서직제 소방서 설치에 관한 규정 제정	
1977	내무부 민방위본부 소방국 설치	독자적 신분법 확립
1978	소방학교설치 (대통령령 제 9106 호)	최초 소방교육기관
1981	대구, 인천 소방본부 설치	
1982	서울시 소방항공대 설치	최초 항공대
1983	서울시 소방교육대 설치, 소방구급법 제정 (법률 제 3675 호, 소방법 제 70 조 10)	
1985	광주 소방본부 설치	
1988.1	전국 6개도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수원) 119 구조대 설치	최초 구조대

에만 專念하여 왔으나 그후 奉仕機能의 강화 요청에 따라 消防救急業務를 消防業務의範圍에 包含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以上의 대략적인 消防史의 概觀에서와 같이 길지않은 消防行政의 歷史속에 때로는 그 組織 및 業務의 잦은 改廢로 획기적인 發展의 계기를

喪失하고, 단순히 火災預防 鎮壓 機能으로 그命脈을維持해 온 것이事實이다.

따라서 安全과 繁榮의 基盤에 올려진 우리나라 經濟成長에 비추어 이제 消防業務도 積極的이니 危難對備 行政組織으로 育成發展 시켜 經濟成長發展에 따른 消防需要를 뒷받침해야 할것이다.

第三章 現行 消防行政 組織의 實態

第1節 行政組織의 構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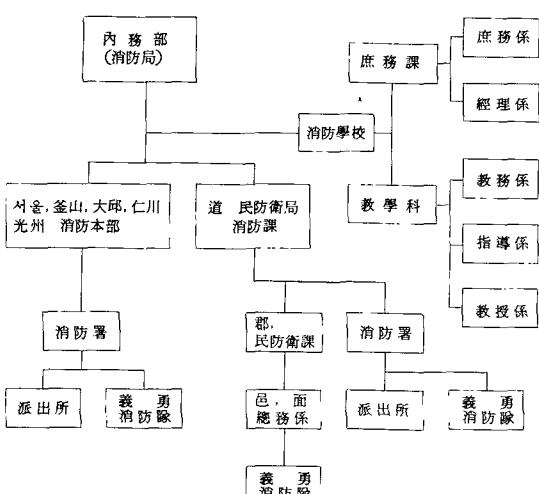
消防組織 및 機構의 빈번한 变遷은 第2章에서 考察한 바와같이 一貫性이 있는 消防行政에 도움이 되지 못하였고 消防行政發展에 沮害 要因이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消防行政 組織은 1975年 8月 26日 大統領令 第7769號로 內務部의 직제를 改定하여 內務部의 民防衛本部에 消防局을 設置하여 消防政策決定機關의 位置에서 全國消防機關을 管掌하고 있다.

1981年 12月 31日 改定된 政府組織法 第2條 6項(中央行政機關의 設置와 組織)에 大統領令이

〈別表 3-1〉 全國의 消防行政 組織 機構

- 消防本部: 5本部
- 消防署: 83署
- 派出所: 332所
- 人員: 9,805名 (國家: 1,142名, 地方: 8,663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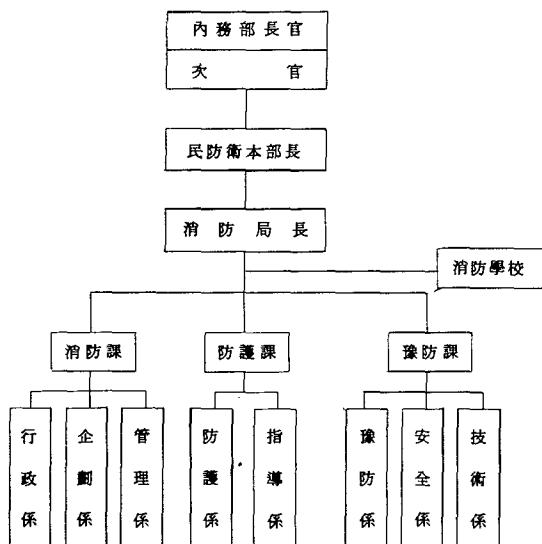


(資料: 88 消防行政資料 및 統計, 內務部)

4 / 2000年代 科學消防行政, 消防技術 및 現實의 消防力 向上方案

〈別表 3-2〉 内務部의 消防行政組織 機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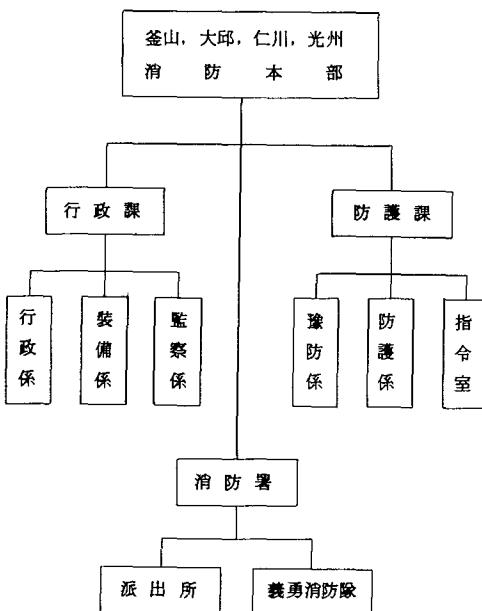
- 3課 8擔當
- 人員: 36名 (消防職 20名, 一般職 12名, 屆職 4名,
一般職 12名: 局長 1人, 課長 1人, 擔當 4人, 係員 6人)



(資料: 88 消防行政資料 및 統計, 内務部)

〈別表 3-4〉 直轄市 消防行政組織 機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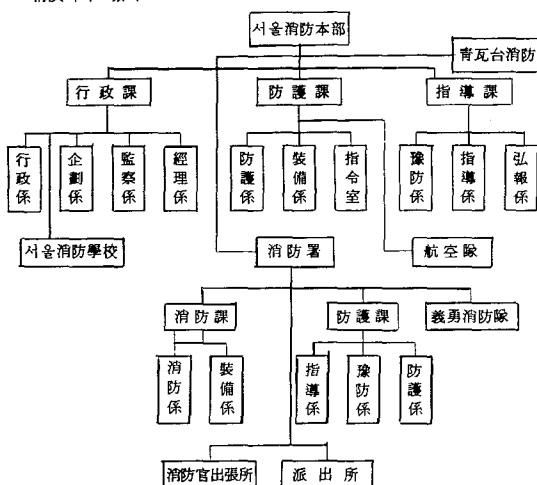
- 2課 5係 1室로 構成
- 人員: 釜山 840名, 大邱 528名, 仁川 379名, 光州 261名



(資料: 88 消防行政資料 및 統計)

〈別表 3-3〉 서울특별市 消防行政組織 機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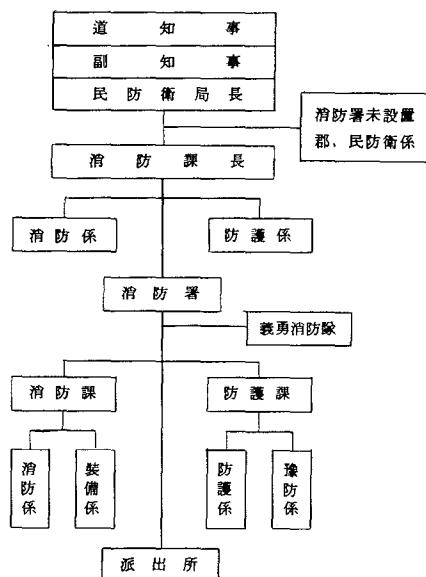
- 서울특별市 行政에 關한 特別措置法, 서울특별市 行政機構에 關한 規程, 서울특별市 事務分掌에 關한 規則의 定하는 바에 따라 1本部, 3課, 9係, 1室, 1學校, 管下에 13個 消防署와 71個 派出所, 1個 出張所, 2個 隊 (青瓦臺消防, 航空隊) 人員 2,885名으로 構成되어 있다.



(資料: 88 消防行政資料 및 統計, 内務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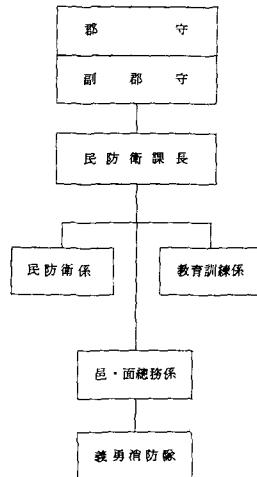
〈別表 3-5〉 各道의 消防行政組織 機構

- 民防衛局내에 民防衛과와 消防課을 두어 消防課 2係에서 消防業務을 全擔



(資料: 88 消防行政資料 및 統計, 内務部)

〈別表 3-6〉 郡地域 消防行政 組織 構造



(資料: 88 消防行政資料 및 統計, 内務部)

定하는 바에 依하여 民防衛業務中 消防業務를 管掌하는 局長, 課長 및 擔當官을 消防公務員으로 補하게 되어있으나, 主務局長인 内務部 消防局長을 비롯하여 内務部와 各道에 一般職과 消防職公務員의 복수補職으로 規定되어 있다. 现 서울과 直轄市는 自治團體 所屬機關으로서 消防署가 設置되어 있고 그 外 地域은 1988年 4月 6日 新로운 地方自治法의 施行으로 地方自治團體 直屬機關으로 편입되어 地方自治團體 地域의 消防事務를 處理하게 되었다. 그러나 서울과 直轄市 地域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에 근거하여, 그외 地域은 大統領令에 의하여 消防機關이 設置되는 二分化된 構造를 가지고 있다.

現在 全國의 消防行政 組織機構는 別表 3-1, 3-2, 3-3, 3-4, 3-5, 3-6과 같다.

第2節 消防力

消防力 補強 問題를 살펴볼때 大然閣호텔의 大慘事が 消防裝備의 科學化를 促進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内務部에서는 1972年度부터 4次에 걸쳐 5개년 補強計劃을樹立하여 消防力의 現代化를 促進시키고 있으나 現在 消防力은 消防力基準(別表 3-7)과 比較하여 볼때 保有率은 消防署 87%, 派出所 81%, 消防裝備 70%, 消防水施設 81%, 消防人力은 소요인원 22,048名이나 保有人員은 9,805名으로 保有率은 45%

水準에 不過한 實情이다.

第3節 消防奉仕行政

1. 1981年 國民에 대한 奉仕活動의 일환으로 釜山 消防本部에서 夜間救急患者 移送業務를 示範實施 한바 利用頻度가 날로 增加하여 82年度에는 “夜間 救急患者 申告센타” 運營規定을 마련하여 9個市 23個 消防署에 緊急隊를 編成하였고, 83年 12月 31日 法律 第3675號(消防法1 第70條10)로 救急業務의 基盤을 構築하여 現在 消防官署에 波及實施하고 있으나 救急患者를 病院에 移送하는데 그치고 있는 實情이다.

〈別表 3-7〉 消防力 基準(消防力 基準對 保有)

區分	消防署	派出所	消防裝備 (소방차, 소방정, 소방헬기)	消防人力	消防甲水施設
所要	96署	410所	3,515臺	22,048名	39,196個所
保有	83署 (87%)	332所 (81%)	2,468臺 (70%)	9,805名 (45%)	31,903個所 (81%)
不足	13署	78所	1,047臺	12,234名	7,293個所

(資料: 88 消防行政 資料 및 統計, 内務部)

〈別表 3-8〉 消防力 補強實績 및 計劃

年度別 區分	基準年度 (71年末)	第1次 (72-76)	第2次 (77-81)	第3次 (82-85)	第4次計劃 (86-90)
消防署	34署	9署	11署	21署	12署
派出所	83所	39所	63所	95所	40所
消防官	974名	1,583名	3,773名	2,123名	1,647名
裝備	1,092台	164台	355台	462台	914台
消防用水	8,074個所 (75年末)	2,524個所 (76年)	5,489個所	8,824個所	11,837個所

(資料: 88 消防行政 資料 및 統計, 内務部)

6 / 2000年代 科學消防行政, 消防技術 및 現實의 消防力 向上方案

〈別表 3-9〉 全國消防署 및 定員

區分 市・道	官署		定員			備考
	消防署	派出所	計	國家	地方	
	計	83署	332所	9,805名	1,142名	8,663名
消防局			20	20		
消防學校			27	27		
서 울	13	71	2,885		2,885	
釜 山	6	34	840	3	837	
大邱	3	23	528	66	462	
仁 川	3	14	379	42	337	
光 州	2	9	261	41	220	
京 鐵	11	45	1,049	177	872	
江 原	7	18	472	107	365	
忠 北	3	9	265	57	208	
忠 南	5	19	520	91	429	
全 北	5	15	453	96	357	
慶 北	10	23	699	158	541	
全 南	5	14	390	80	310	
慶 南	8	33	853	144	709	
濟 州	2	5	164	33	131	

(資料 : '88 鎮壓消防力 現況, 内務部)

〈別表 3-10〉 年度別 救急患者 移送実績

年度 區分	'81	'82	'83	'84	'85	'86	'87	增加率 (%)	
								年平均	'86
移送件數 (件)	2,170	6,858	11,756	16,211	24,291	29,813	36,863	70.3	23.6
移送患 者數(名)	2,241	7,373	12,600	17,475	25,880	31,632	39,027	71.9	23.4

(資料 : '88 消防行政資料 및 統計)

2. 또한, 國民便宜의 100가지 施策推進事項의 한 방향으로 '85年度부터 “消防施設 故障申告센터”를 設置 運營하여, 特殊場所에 設置된 消防施設에서 흔히 發生하고 있는 輕微한 고장은 消防官署에서 無料로 迅速히 補修活動을 展開하여, 施設主의 便宜를 圖謀하고 自衛消防活動을 제고함으로써 信賴받는 消防行政을 具現하고자 努力하고 있다.

第四章 2000年代 消防行政을 為한 問題의 提起

第1節 現行 消防行政 構造上의 問題點

1. 地方自治制下의 消防實務에 對한 責任

발표 4-2의 消防法沿革에서 보는것과 같이 우선 消防業務遂行 責任부터 살펴보면 消防法 第

消防 對象物	計	検査時 現場修理		申告接受 出張修理	
		491	352	139	
施 部 品	표 시 등		후 - 즈		
	490	429	61		
輕微한 設 故 障 (件)	計	소화기	소화전	스프링 클라	하 - 론
	19	17			
修 理	차 탐	경 보 설 비	피 난 설 비	기 타	비 고
	388	87	62	131	66 274

(資料 : 麗水消防署 '88 消防業務統計)

3條에 의한 消防業務에 對한 責任이란 消防官署長은 誠實히 消防業務를 推進해야 하며, 그 義務主體가 消防業務遂行 義務를 위반하였을 때 法律上 재재를 받거나 不利益한 結果를 받는 地位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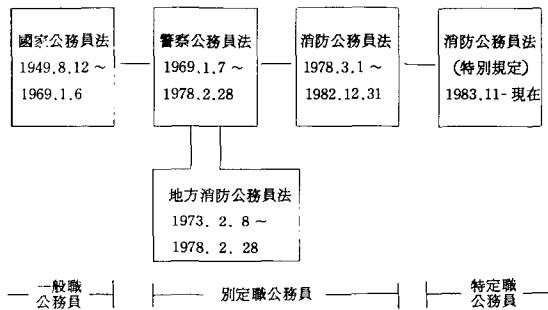
이를 狹義의 概念으로 말한다면 消防業務와 關聯한 “公務員法上 責任 즉 行政上 責任”이라고 할 수 있지만 廣義로는 刑事 및 民事上의 責任까지 包含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大型火災 發生時 地方自治團體長을 問責하는 事例가 거의 없고 素防署長이 火災豫防 및 鎮壓業務에 전적인 責任을 지고 있는 實情으로 消防法第3條에 의한 市長, 郡守의 監督權 行事가 現在까지는 不必要한 것으로서 여고 왔다. 또, 地方自治制에 根據하여 消防機關이 地方自治團體의 直屬機關化 됨으로 地方自治團體長의 消防業務수행 책임이 地方自治團體長의 消防에 對한 認識과 財源不足으로 잘못하면 消防行政機關과 그 機能이 더욱 弱化될 우려가 크다.

2. 消防公務員 身分體系

1969年 一般職 公務員에서 分離되어 警察公務

員消防職으로 되었다가 1973年 2月 18日 法律第2502號豆 地方消防公務員法을 制定하고 有給常備隊員을 地方消防公務員으로 任用 함으로써 警察公務員法에 依한 消防公務員과 身分體系가 二元化 되었으며, 나아가 1977年 消防公務員法이 制定되어 施行됨으로서 하나의 獨自의 身分法을 가지고 있으나 全國消防公務員의 身分은 國家職과 地方職으로 區分되며 約90% 以上이 地方消防公務員으로서 運營豫算의 財源에도 國費와 地方費로 區分되어 人事制度上 및 升進·任用의 不合理點을 露出하고 있으며, 効率의in 人事運營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實情이다.

〈別表 4-1〉 消防公務員 身分法 變遷



(資料: '88消防行政資料 및 統計, 内務部)

〈別表 4-2〉 消防法 沿革

區分	公布日字	改 正 要 旨
制定	'58. 3. 11 (法律第 485 號)	<ul style="list-style-type: none"> ○火災·風·水·雪害 警防警戒, 鐫壓規定 ○消防施設 緊急化 ○建築許可時 消防署長 意見聽取 ○義勇消防隊 設置
1次 改正	'63. 5. 3 (法律第 135 號)	<ul style="list-style-type: none"> ○消防官의殉職·公傷의補償에 關한 規定 削除 ○危險物取扱主任 免許試驗等의 手數料 規定 新設
2次 改正	'67. 4. 14 (法律第 1955 號)	<ul style="list-style-type: none"> ○風水·雪害業務 削除 ○危險物關係規定 補完
3次 改正	'70. 12. 31 (法律第 2249 號)	<ul style="list-style-type: none"> ○市長·郡守의 消防業務에 關한 消防署長 指揮·監督規定 新設 (서울, 釜山外 亂留保) ○消防署 未設置 市·郡의 消防業務는 管轄警察署長이 違行
4次 改正	'73. 2. 8 (法律第 2503 號)	<ul style="list-style-type: none"> ○消防法 全文改正 (消防施設 促進)
5次 改正	'75. 12. 31 (法律第 2802 號)	<ul style="list-style-type: none"> ○消防本部長 및 消防署署長은 市長·郡守의 指揮監督을 授托하고 消防署 未設置지域은 市長·郡守가 消防業務를 違行토록 함. (從前: 警察署長)

區分	公 布 日 字	改 正 要 旨
		<ul style="list-style-type: none"> ○火災豫防에 關한 市·郡條例에 罰則을 規定 ○消防用 機械·器具等을 製造 및 販賣하고자 하는자는 手數料를 納付토록 함 ○市·郡의 消防力基準을 大統領令에서 內務部令으로 調整
6次 改正	'76. 12. 31 (法律第 2947 號)	<ul style="list-style-type: none"> ○消防用 機械·器具 販賣等을 許可制에서 申告制로 緩和 (市·道知事) ○消防用 機械·器具等의 檢定을 內務部長官이 指定하는 者가 代行할 수 있도록 함
7次 改正	'80. 1. 4 (法律第 3229 號)	<ul style="list-style-type: none"> ○住宅使用用 危險物 貯藏所는 危險物 製造所等의 設置許可 對象에서 除外 ○「消防安全協會」設置 根據規定 新設 ○消防施設 및 危險物設置基準 防火管理者 選任對象等 緩和 ○消防檢查回數 緩和 (年 2~6回→年 2回로 一元化)
8次 改正	'80. 4. 4 (法律第 3413 號)	<ul style="list-style-type: none"> ○火災保險協會의 消防檢查 特例規定 刪除 ○消防檢查 年 2回→年 1回로 緩和 ○建築許可等의 同意를 消防施設等 完工檢查畢證 交付로 簡化 ○高層建物 15m以上→ 31m以上 調整 (從前 15m以上→ 31m以上) ○危險物 臨時 貯藏·取扱承認期間 延長 緩和 (10日→60日) ○既存 消防對象物의 施設基準不適及 ○注油取扱所에서 一般需要者에게도 販賣 할 수 있도록 함.
9次 改正	'83. 12. 30 (法律第 3675 號)	<ul style="list-style-type: none"> ○消防用 機械·器具 販賣等 自由化 ○消防設備等을 登錄制에서 免許制로 轉換 ○防炎物品의 性能檢査 委託規程 新設 (消防署長→韓國消防檢定公社) ○請願消防員制 新設 ○消防救急制度 新設 ○호텔等 大型宿泊施設의 自動消火設備 및 避難器具 补強

3. 消防公務員 報勳制度(殉職, 公傷)의 法制化 未備

消防法 第1條(目的)에는 消防公務員 本연의 義務에 具體的인 明示가 되어 있으나, 義務遂行中 發生하는 死傷者에 對한 報勳에 대해서는 法制화 되어 있지않는 實情이다. 警察의 境遇 警察

公務員法 第16條(報勳)에 警察公務員으로서 戰鬪 其他 職務遂行 또는 教育訓練中 死亡한者(公務上 疾病包含) 및 상이(公務上 疾病包含)로 退職한자로서 그 遺族 또는 家族은 國家有功者 禮遇等에 關한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禮遇를 받는다고 法律로 明文化 되어 있으나, 消防公務員은 消防法 制定當時(58.3.11 法律第485號)에 消防公務員의 報勳에 關한 規定이 되어 있었으나, 1次 改正當時(63.5.3. 法律第1955號) 削除되어 88年 現在 9,800여명에 이르는 消防公務員들의 職務의 危險度에 比하여 社會의 無關心과 열악한 勤務條件 및 危險한 勤務狀況으로 해마다 死傷者數가 急增하는 實情이다.

消防公務員 報勳에 關한 規定이 削除된 1963年 5月3日 以後 消防公務員의 殉職, 公傷者(別表 4-3)을 살펴보면 殉職53名, 公傷 380名, 計433名으로 全 消防公務員 9,800余名의 2%에 該當하는 숫자이다.

〈別表 4-3〉 消防公務員 殉職・公傷者 現況

區 分	計	63-70年	71-75年	76-80年	81-85年	86-88現在
計	433	31	69	109	164	60
殉職	53	11	10	14	11	7
公傷	380	20	59	95	153	53

(資料: 自治消防 '87. 4月號)

4. 消防火의 不足

現在 都市規模에 比하여 消防火의 不足함은 第3章(別表 3-7 消防火 基準)에서 살펴본바와 같다. 이에 앞으로 2000年代 科學消防에 맞는 現實의인 消防火의 补強策이 當面 課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消防施設이 되어 있지 않으면 強制手段으로 處罰까지 하여 是正하고 있으나 消防火의 不足한 與件에서 消防業務을 執行하여 大型火災가 發生하면 역부족의 責任을 물어 當該署長 및 關係者の 職位解除等 責任을 묻는 逆說의인 境遇도 없지 않았다.

예컨대 麗水消防署의 境遇 火災出動部隊 現況은 別表4-4와 같은 實情으로 機關員 1名이 車輛 2台를 擔當하고 있는 境遇도 있으며 警防要員 역시 人員不足으로 因하여 2次出動部隊 車輛에

는 編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1次出動部隊 補強을 為하여 2次出動部隊 機關員이 先發隊 警防要員으로 出動하고 있는 境遇도 있는 實情이며, 1次出動部隊 車輛도 火災出動時 車輛 1台當 1~3名의 鎮壓要員 밖에 되지 못하는 實情으로 先着隊의 重要任務인 人命救助와 火災의 初期鎮壓 時期를 놓쳐버릴 우려가 없지 않다.

〈別表 4-4〉 麗水消防署 火災出動部隊 編成現況(本署 連燈派出所)

本署 連燈派出所 勤務人員:40名(甲·乙部 20名)

(勤務人員 20名: 警防:9名, 機關員:11名)

(1次 出動部隊)

鎮壓部隊 (車種)	指揮車	5號 (普通車)	6號 (多目的車輛)	7號 (化學車)	12號 (小型普通車)
人 員	狀況室長·現場調査要員	警防: 3名	警防: 2名	警防: 2名	警防: 1名

(2次 出動部隊)

鎮壓部隊 (車種)	救急車	9號 (普通車)	10號 (大型普通車)	11號 (多目的車)	13號	15號 (수조부)
人 員	機關員 : 없음	機關員 : 없음	機關員 : 없음	機關員 : 있음	機關員 : 있음	機關員 : 있음
	警防 : 없음	警防 : 없음	警防 : 없음	警防 : 없음	警防 : 없음	警防 : 없음

- 9, 10號 車輛은 巡察車, 行政車 機關員이 兼함
- 15號 車輛은 機關員은 火災出動時 1次出動 警防要員으로 出動
- 10, 11號 車輛은 高層建物 火災時 1次出動
- 火災接報 받은 通信要員은 1次出動 警防要員에 編成되어 있으나 現場出動은 뜻함(火災出動時 通信要員 2名勤務: 通信班長1名·申告接報時 要員1名)
- ⑤ 現場調査要員: 市場固定勤務 1名, 通信班長 1名
- 2次 出動部隊 全車輛 警防要員 缺음.

5. 消防專門人力 養性機關 및 研究機關의 不足

消防業務는 專門技術分野로서 어느 職務보다도 專門知識을 要하나, 現 우리나라의 消防專門人力 養性機關으로 87學年度부터 경원專門大學(大田市所在)과 중경工業專門大學(城南市所在)에 消防安全管理料가 開設되어 있고, 東國大學校 行政大學院 公安行政學科에 消防行政 專攻이 開設되어 있을뿐, 科學消防으로 向한 有能한 人才

養成을 위한側面에서 볼때 크게 미흡한 實情이다.

또한, 專門家들로構成된 消防研究機關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最近에 設立된 韓國火災保險協會 傘下에 防災研究所가 있을 뿐이다.

第2節 消防奉仕行政의 問題點

1. 救急業務는 날로 增加趨勢에 있으며, 그에 따라 各樣各色의 患者를 接하게 된다. 그러나 救急業務는 救急係등의 專擔部署가 없으며 看號資格所持者 등 專門知識을 가진 隊員의 確保가 되어있지않고 일정교육 이수자를 指定 운영하는 實情으로 救急患者를 단지 病院에 후송하는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2. 또한 消防施設故障申告 센터의 運營도 消防施設에 關한 修理專門要員이 없어 輕微한 故障施設과 部品交換에 머물고 있는 實情이므로 建物主의 實際 費用 負擔이 되는 故障은 專門業體에서 修理를 함으로써 消防施設 故障申告 센터의 본연 目的達成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第五章 2000年代를 向한 長期 消防發展方案

第1節 2000年代의 消防行政組織 構造改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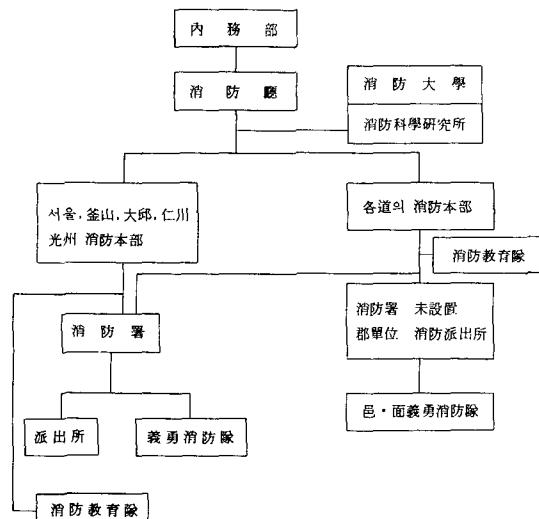
1. 消防組織의 擴大改編

政府組織法 第2條6項(大統領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民防衛業務中 消防業務를 擔當하는 局長·課長 및 擔當官은 消防公務員으로 補할수 있다)의 规定을 “消防公務員으로 補한다”라고 政府組織法을 改正하여 消防業務는 消防公務員이 擔當하게 하며, 消防法 第3條(消防業務에 對한 責任等) 중 第1項의 宣言的 規程을 改正하여 地方自治團體長의 消防業務 遂行에 對한 責任을 강화할 必要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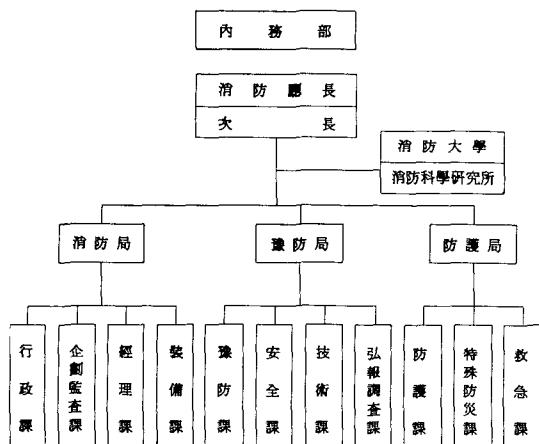
2000年代의 理想의 消防行政組織 發展方向으로는 別表 5-1, 5-2, 5-3의 消防組織 機構表와 같이 改編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즉, 理想의 消防組織의 發展方向으로서 內務部 傘下에 消防廳을 設置하고, 消防學校를 4年制 消防大學으로 昇格시켜 幹部職 公務員의 管理能力培養과 專門教育

을 擔當케 하며, 附設로 消防科學 研究所를 設置하고 各道의 消防課는 道消防本部로 格上 改編하여 級別를 一元化 하고, 道消防本部에 消防教育隊를 新設하여 下位職 消防公務員의 基本教育을 專擔케 한다.

〈別表 5-1〉 2000年代의 全國의 消防行政組織 機構



〈別表 5-2〉 2000年代의 中央消防行政組織 機構



○機構: 1廳, 1次長, 1大學, 1研究所

3局, 11課, 39係

○職級: 廳長: 소방총감, 研究所長: 소방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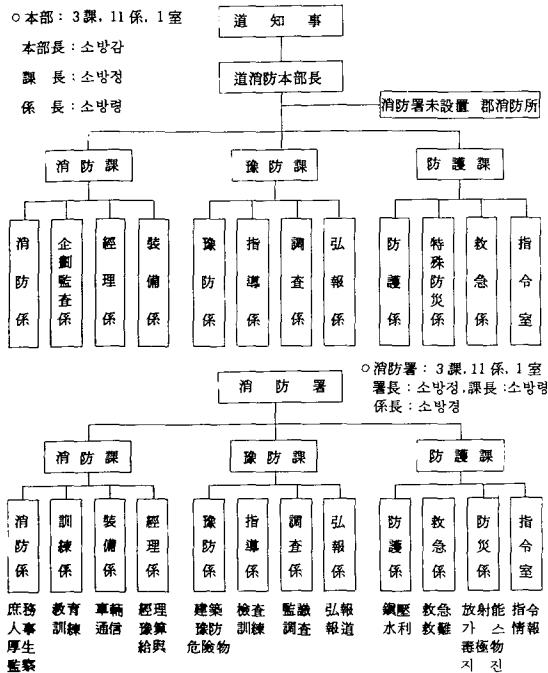
次長: 소방사감, 課長: 소방정

消防大學長: 소방사감, 係長: 소방령

局長: 소방정감

10 / 2000年代 科學消防行政, 消防技術 및 現實의인 消防力 向上方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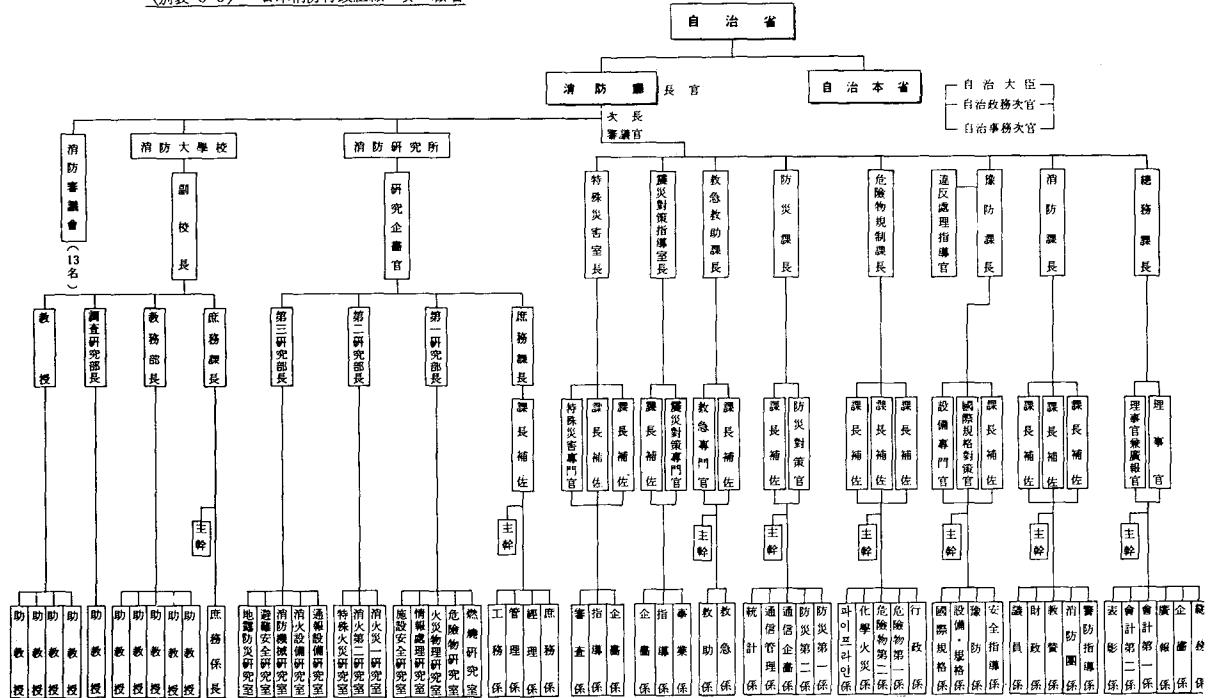
〈別表 5-3〉 2000 年代 各道의 消防行政組織 機構



〈別表 5-4〉 바람직스러운 2000 年代 消防階級構造와 警察·一般職의比較

消 防 官		警 察 官		一般職
現 行	改 正	階 級	職 位	
消防總監	消防廳長	消防廳長	治安總監	관리관
소방사감	消防次長	消防次長	치안정감	서울市警局長 警察大學長
소방정감	消防學校長	消防廳局長	本部次長	치안 本部次長 京畿·釜山局長
소 방 감	消防學校長 本部部長	研究所長 서울本部部長 서울消防學校長 直轄市各道本部長	本部部長 道警局長	부이사관 서기관
소 방 정	消防署長 本部係長	消防廳課長 서울本部安直轄市 各道本部係長 消防署課長	警 察署長 本部課長	서기관 사무관
소 방 름	消防署長 署課長	消防廳係長 서울本部安直轄市 各道本部係長 消防署課長	警 察署長 署課長	주사보
소 방 히	消防署課·係長	消防署 係長	警 察署 課·係長	주사
소 방 위	署係長·派出所長	派出所長	경 위 署係長·派出所長	
소 방 장	派出所長		경 사 支署長	주사보
소 방 교			경 장	서기
소 방 사			순 경	서기보

〈別表 5-5〉 日本消防行政組織 및 職名



한편, 現行 9等級인 階級構造를 向上調整하여 11等級으로 하며, 消防廳長은 消防總監으로 補하고, 次長은 消防司監으로 補하며, 現行 消防局의 職制上 課長職級이 消防監이며, 警察의 同一 階級인 警察官은 課長上位職인 治安本部의 部長補職이고, 課長은 總警이므로 警察機構와의 均衡을 維持하고 消防組織의 活性화와 專門化를 期하도록 現行 職級構造를 改正할 必要가 있다. 그 바람직스러운 改正 職級構造는 別表5-4와 같다.

2. 指揮體系 및 人事制度 改善

消防業務의 專門性, 技術性等 特殊性에 발맞추어 指揮權과 責任을 單一化하여 內務部長官—消防廳長—道知事—消防署長으로 하고 豫算上의 問題만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責任집으로서 일사분란한 指揮體制가 定立될 수 있으며, 國家와 地方消防公務員으로 身分이 二元化되어 있는 現行 制度를 改善하여 道消防本部에서 諸單位～에서 管掌함으로서 効率의이고 일관성있는 人力需給對策을 講究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매년 道消防本部 主管아래 定期的으로 昇進任用 試驗을 實施하여 昇進 적체를 解消하고, 消防官으로 공채되어 오면 오직 消防을 平生天職으로 알고 消防에 對한 研究와 自己發展, 自己成長, 等 能力を 發揮할 수 있도록 政策의 인待遇받침이 있어야 하겠다.

3. 郡單位 以下 地域의 消防機關 常備化

現在 中央執權化的 消防力基準은 市街地 및 人口數, 密集建物面積等을 감안하여 審議承認하여 왔다. 現行 經濟趨勢로 미루어 볼 때 2000年代에는 福祉行政次元에서 住民한 사람 한 사람의 安全에 對한 欲求를 充足 시키도록 全國土, 全地域에 消防機關의 常備化가 必要한 것이다.

日本의 境遇 消防의 常備化에 對하여는 “消防本部 및 消防署를 設置해야 하는 市町村을 定하는 정령”에 의하여 市는 모두 消防本部 및 消防署의 設置가 義務의으로 되어있고, 町村에는 自治大臣이 當該 町村의 人口, 氣象, 條件等을 考慮하여 指定한것에 對하여는 同一한 義務가 發生토록 되어있다.

(政令:合議體로서 内閣이 發하는 命令)

1986年 4月1日 現在 常備화 市町村은 2,967 市町村中 정령 市町村은 2,958 市町村이며 임의로 常備화 하고 있는 것은 5町村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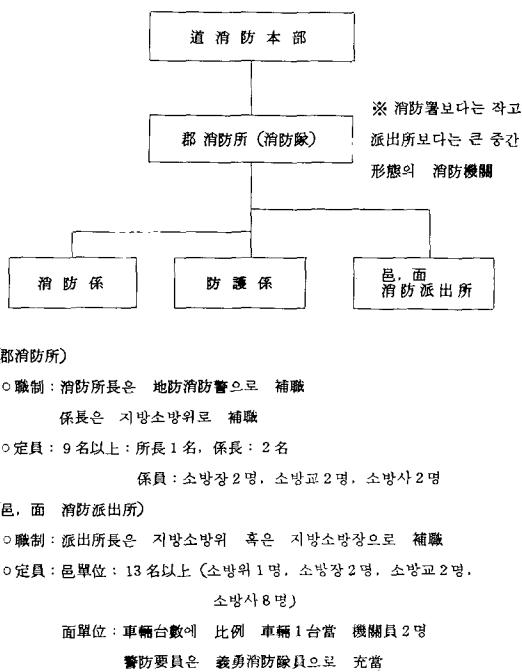
常備화率은 市町村數의 91.2%에 달하며, 全國 人口의 98.5%가 常設消防機關의 消防서비스를 받고 있어 全國的으로 볼 경우 주로 산간지방, 낙도인 町村의 일부를 除外하고는 消防署로 常備화 되어져 온 實情이다.

예컨대 韓國電力에서는 산골벽지 電氣需用家가 發生해도 投資效果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이 確實하지만 國民福祉向上 次元에서 많은豫算을 들여 電氣를 보내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때 消防機關의 常備화 一環으로서 消防署 未設置 郡地域에 消防官署의 設置가 더욱 必要해 진다.

郡地域에 消防隊를 設置하고 面單位地域까지 消防派出所를 新設하여 國民들에게 消防의 惠澤을 고루 누리며 安定된 삶을追求토록 하여야 하겠다.

또한, 大型火災, 風水害, 石油基地의 災害等 大規模인 災害는 當該郡의 消防力만으로 방어 할 수 없는 境遇가 많다. 따라서 當該郡이 單獨으로 處理하는 것보다도 隣接郡과의 相互應援 또는

〈別表 5-6〉 2000年代 郡地域의 消防行政組織 機構



共同組織等에 의해 消防事務를 處理하는 方式인 “相互應援協定에 의한 組合을 設立”하는 方式 및 “消防特別區(Special District)를 設置하여 廣域消防體制를 이룩하여 處理함이 보다合理的이라 하겠다.

4. 消防所要財源 確保

1) 消防共同施設 賦課方法의 改善

火災危險의 負擔은 그 對象物이 갖는 物量의 인 要因(規模, 建築, 材料, 施設等) 뿐만 아니라 失火, 放火等의 人的要因(收容人員, 出入人員)과 建築物의 密立이나 通路가 狹小하여 消防車의接近이 困難하여 연소우려가 있는 環境的 要因도 있다

이와같은 要因들은 相互關係를 갖고 있으며 危險負擔이 클 때 公設消防力의 對應規模도 같은 크기로 構成되어야 地域社會의 消防安全目的을 達成할 수 있다.

그러므로 火災危險 對象物을 地方稅法 施行令 第199條의 2에 따라 火災危險 建築物로 分類하여 劃一의으로 適用할 것이 아니라 受惠者 負擔의 原則에 따라 消防法 施行令 別表1에 의한 消防對象物을 火災危險度에 따라 細分하여 賦課適用 합으로써 稅數를 擴大해야 한다. 또한 地方稅法에서 獨립한 消防制定法을 測定하여 消防稅 징수에 원활을 기하고 消防機關에서豫算編成權을 갖도록 해야한다.

2) 消防共同施設 負擔金의 賦課徵收 檢討

消防法 第29條1項에는 “特殊場所의 關係者는 大統領이 定하는 消火設備, 避難設備, 消防用水設備 其他 消火活動上 必要한 設備를 內務部令이 定하는 基準에 따라 設置하고 維持하여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이러한 設備를 法으로 定하여 設置 維持하도록 한 것은 火災로 因한 被害를 當害 對象物內에 局限시켜 最小化하여 地域社會의 消防安全의 負擔을 나누어 갖는데 目的이 있다.

그러므로 所有한 財產과 人命被害 防止를 為해서 住民들은 防火施設의 設置나 管理를 積極적으로 해야한다. 그러나 그 義務를 소홀히하여 對象物이 (火災～關係者에게) 法定施設을 完備時까지 未備한 施設에 比例하여 消防共同施設 負擔金을

一定하게 賦課徵收하여 稅外收入源을 確保함으로써不足한 消防財源의 擴充을 期할 수 있다.

3) 危險物 車輛, 船舶등에 대한 消防稅 賦課

'87火災發生統計를 살펴보면 車輛火災는 전체火災發生件數중 3位를 차지하고 있으며, 危險物 가스등에 의한 火災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따라서 막대한 消防力を 소모하는 危險物, 가스, 車輛, 船舶등에도 消防稅를 부과하는 것이 地方稅法 精神에 비추어 타당하다.

5. 消防公務員 報勳法 制定

現在 우리 消防組織 構成員에 있어서 團體構成員의 사기는 무엇보다도 重要하다. 사기는 目標를 追求하는 協同精神과 構成員의 自發的이고 持續的인 業務遂行 意慾라고 할 수 있으며 사기가 저하된 組織은 効率的인 業務遂行과 將來의 發展을 期待할 수 없는 것이다.

消防法 1次改正當時 削除되었던 消防公務員報勳制度는 消防公務員의 不斷한 努力과 次元높은 政策的인 配慮가 肘받침되어 消防公務員이 마음놓고 消防業務에 專念할 수 있도록 부활되어 2000年代에는 1次의인 欲求보다도 名譽를 위하여 自己를 懲牲할 수 있는 기반이 造成되어야 할 것이다.

第2節 消防奉仕行政의 發展對策

1. 消防奉仕行政의 擴大

2000年代에는 奉仕하는 消防像을 뿌리깊이 定着시키기 위하여 消防公務員의 奉仕姿勢를 確立하고 對民業務를 國民便宜 위주로 改善하는 한편 모든 對民業務는 肯定의 姿勢로 檢討 處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災難 救助 및 復舊支援活動 強化等 消防奉仕領域을 漸次 開拓나가고,

1) 가뭄으로 인한 食水와 農業用水의 供給等 旱害對策 業務와

2) 장마기의 集中豪雨로 인한 沈水地域의 排水作業等 水難對策業務

3) 有毒gas 漏出, 爆發事故, 災전사고等 各種 災難의 救難業務 및

4) 石油化學工業의 安全業務等 모든 奉仕業務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2. 救急活動의 改善策

1) 救急需要가 每年 增加趨勢에 있음을 감안하여 効果的인 救急서비스를 施行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診療情報確保等을 위한 救急情報시스템體制의 進入이 필요한 實情이다. 이로 인하여 醫療機關 診療情報 蒐集分析, 出動하고 있는 救急隊에 病院選擇 情報提供等 効率的인 運用을 行하는 同시에 市民들로부터의 醴療機關案內, 診療情報의 提供等 電話서비스도 行하므로써 行政機關에 대한 信賴度가 높아 질것이다.

2) 日本의 경우 東京消防廳은 물론이며, 대소 消防局 및 산하消放署에는 救急課 및 救急係가 設置되어 救急業務를 專擔하고 있는 實情이나 우리나라에는 中央部署 및 特別市, 直轄市 單位에도 救急課, 救急係等이 專擔部署가 없어 救急業務 專擔部署를 들수 있도록 必要한 措置가 要望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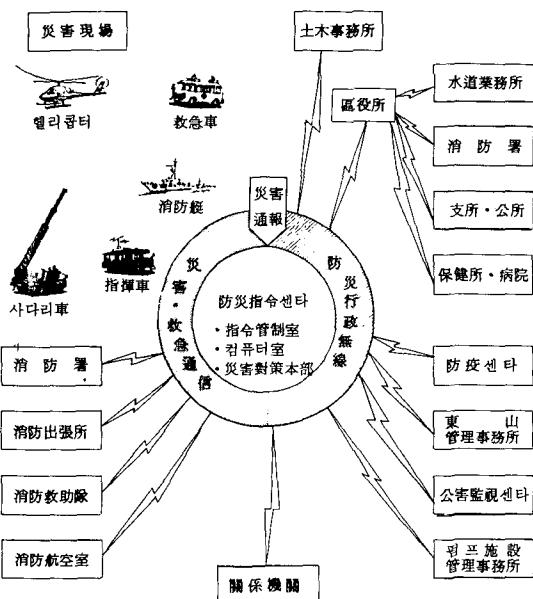
3) 우리나라 救急隊員의 配置基準은 既存 警防要員中에서 일정한 教育을 이수한자를 指定하여 運營하고 있어 救急業務의 專門化, 効率化는 물론 火災鎮壓業務의 원활한遂行을 위하여 別途로 定員에 의한 管理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救急器資材 確保基準을 策定토록 措置하여야 할 것이다.

3. 消防業務의 科學化

日本과 같은 境遇에는 2年前부터 初期消火訓練, 應急救助訓練, 煙氣體驗訓練等 1台의 車에서 30여가지 各種訓練을 體驗 할 수 있는 防災訓練車의 活用과 135미터 以上에서 원격조작이 可能하고 자주식 大型 방수포를 탑재한 초대형 化學車와 現場 消防活動中 給食을 提供하는 給食車를 運營하고 있다.

最近 人口, GNP, 에너지소비량, 消防對象物의 大型화等 消防與件이 每年 伸張되고 있으며 救急需要 또한 날로 增加趨勢에 있어 이에 對한 消防情報시스템의 構築이 時急한 狀況이다. 이러한 狀況으로 東京消防廳을 비롯하여 日本의 消防機關에서는 오래전부터 “防災指令 센타”를 設置하여 科學的인 火災豫防 및 鎮壓體系確立에 기여해오고 있어 우리나라 消防에서도 2000年代에는 MIS(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즉, 綜合防災情報 시스템의 導入이 必要 不可缺 하

〈別表 5-7〉 日本의 防災情報通信體系圖



다 하겠다. 현재 우리나라 消防官署中에 防災關聯情報 시스템이 設置된 官署는 아직 없으나 서울, 仁川, 京畿道의 일부 消防署와 麗水消防署에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지만 프로그램제작등 專門技術人力이 確保되지 않아 거의 活用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用役에 의해 消防對象物 關聯資料等을 入力 시킬려면 많은 豫算이 所要되므로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의 活用이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電子工學, 電子計算學科」等의 專門大, 大學等의 학생들을 消防獎學生으로 選拔할 수 있도록 현행 “消防公務員 採用候補者 奬學規程”을 改正하여 매년 일정 人員의 消防獎學生을 選拔 養成하고 또한 既存消防公務員 중에서 關聯類似分野 資格所持者나 高·大學卒業者를 選拔 關聯 有關機關에 持續的인 委託教育을 實施하는 한편, 內務部 消防學校에 電子通信科等의 課程을 編成하고 關聯 實習 기자재를 確保 專門教育을 實施하여 技術人力을 確保하여 다가오는 情報化時代에 對備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4. 消防救助業務 體制의 確立

우리나라 消防救助業務는 火災危險要因의 急增으로 各種 災害樣狀도 複雜 多樣해 人命事故가 빈발하여 1988.8.1 을림의 消防對策의 일환으

로 올림픽개최 도시인 全國 6個都市(서울, 釜山, 大邱, 仁川, 光州, 水原)에 特長차와 함께 隊員 9名으로 人命救助隊를 創設하였으나, 日本의 境遇 1935年度 부터 救助活動을 본격적으로 實施 한후 海外에서 대지진의 災害가 發生한 경우에 파견되는 國際緊急救助隊의 설치도 推進하고 있다. 實例로 1983年 8. 22 發生한 아프리카 카메룬 공화국 나오스호의 有害gas 분출재해, 同年 10月 11日 엘살바도르 공화국에서 發生한 지진 재해에는 東京消防廳等에서 救助隊員이 國際緊急援助隊의 일원으로 파견되어 消防關係에서는 처음으로 海外에서 高度의 기술을 구사하여 救助活動의 業務에 從事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消防에서는 아직 초기단계로 日本과 比較가 되지 않으나 安全事故 多重犯罪 警護活動等의 出動件數는 많아질 趨勢에 있어 救助活動에 必要한 裝備를 確保하고 高度의 專門的인 救助知識과 技術의 習得으로 救助業務 體制의 確立은 時代에 부응하는 2000年代 時代의 要求라 할 수 있겠다

第6章 結 論

1. 2000年代의 消防環境

우리들은 흔히 未來에 對하여 큰 希望을 갖기 쉽다. 그러나 앞으로 10여년이 남은 2000年代에는 現在의 經濟成長 템포와 文化發展趨勢에 비추어 볼 때 高度產業社會와 文化가 質達된 社會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研究課題가 2000年代의 科學的 消防力 向上 方案이므로 다분히 假定을 通한 未來學의 檢討外에 理想的이고 未來志向의인 理想型 消防發展 모델을 提示할 수 밖에 없다.

아울든 2000年代는 高度의 產業經濟社會와 文化水準의 向上으로 人口의 增加와 그에 따른 都市의 發達, 產業施設의 增加, 道路交通 및 通信·情報施設의 發達과 더불어 文化체육施設도 增加될 것임에 틀림없다. 이와같은 外形的인 發達과 더불어 經濟이 流通速度가 빨라지고 經濟 또한 統制 도는 計劃經濟에서 벗어나 自律經濟로 轉換되어 社會에서 民間部分의 活動領域이 擴大될 것이다. 그러므로 社會의 各 部分에서 지금과

같이 지도·통제위주인 助長行政의 影響力이 縮小되고 保護的인 事務(Protective Service)인 消防業務의 機能이 強化될 것이며 住民의 安全에 對한 欲求가 增加할 것이다.

이와같은 狀況을 假定해 볼때 다음과 같은 2000年代의 合理的인 消防發展 모델을 提示할 수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느껴왔고 여러 經路를 通한 研究發表에서도 指摘된 것이지만 現在의 問題點을 改善하기 為한 漸增的인 發展方向提示인 것이다.

2. 業務 및 機能의 擴大

- 1) 2000年代에는 火災의 鎮壓, 豫防 뿐만아니라 救急 및 救難業務
- 2) 有毒gas漏出, 爆發事故, 大型事故時 人命救助 및 現場 處理業務
- 3) 風水害, 民防衛事態時 住民保護業務等 保護的 事務의 主導的 機能을 遂行해야 한다.

3. 消防組織의 擴大 改編

현재의 行政學의 理論으로는 消防事務는 地方自治團體의 固有의 事務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都市의 廣城化, 小邑의 都市化 현상, 危險物의 使用量 增大 및 擴大, 道路交通의 發達과 더불어 消防事務는 廣城化 될 수 밖에 없다. 이것은 英·美諸國의 消防特別區 制度에서도 그 特徵이 잘 나타난다. 이 制度는 傳統的인 地方自治團體의 行政管轄을 초과한 數個의 地方自治團體를 管轄하는 特別區制度이다.

특히 戰時 民防衛事態를 假定할 때 廣城 消防體制의 必要性은 더욱 절실해 진다. 이와 같은 점에서 長期의in 消防組織 모델은

- 1) 中央消防廳을 設置하여 消防의 主要政策決定, 消防用 機械器具의 品質向上, 消防力이 不足한 地方自治團體의 支援, 民防衛事態對備業務를 수행하고 消防大學 및 消防研究機關을 設置 運營하며
- 2) 道 및 特別(直轄) 市等 中間 地方自治團體에 消防本部를 設置하여 廣域 消防體制를 指導하고 道內 消防公務員의 人事調整機能을 擔當케 하며
- 3) 消防署, 職制 擴大 改編과
- 4) 郡單位 消防行政機關의 常備化가 檢討되어

야 한다.

4. 消防所要財源 確保

- 1) 消防共同施設稅 賦課對策을 改善하여 稅收를 擴大하고
- 2) 消防施設 負擔金 徵收 檢討 및
- 3) 나아가 積極的으로 獨立된 消防財政法의 制定 施行도 要請된다.

5. 科學的인 消防行政

2000年代는 모든 災害에 效率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MIS等의 導入으로 災害情報處理 시스템의 活用과 新型裝備開發 等이 要請된다.

6. 消防公務員의 士氣 昂揚

職務遂行中 死傷한 消防公務員에 대한 報勵制度의 確立과 危險職務 遂行에 따른 報酬體系도 再檢討되어야 한다.

위에서 살펴 본 事項은 현재 우리 消防이 안고 있는 問題點에 대한 漸增的 改善策이며 보다 効率的인 消防業務 推進을 위한 合理模型의 提示이다. 우리가 함께 일하고 우리 生의 精誠을 바칠 消防의 發展과 2000年代의 名譽로운 消防奉仕活動을 위하여 지금은 우리 消防人이 處해 있는 狀況에서 하나 하나 漸進的 發展을 追求함으로써 밝은 2000年代에 對備해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1. 內務部, 「消防行政資料 및 統計」, 서울:正和印刷文化社, 1988.
2. 內務部, 「消防公務員 海外研修結果報告書」, 內務部, 1987.
3. 內務部, 「消防力 基準에 關한 規則」, 內務部, 1988.
4. 內務部, 「消防訓令例規集」, 內務部.
5. 內務部, 「鎮壓消防力 現況」, 內務部, 1988.
6. '88消防關係法令集」, 서울:크라운출판사, 1986.
7. 李保相, 「消防關係法令集」, 서울:螢雪出版社, 1986.
8. 崔成龍, 「最新 消防法規解說集」, 서울:螢雪出版社, 1986.
9. 「消防公務員 行政形態에 關한 調查研究」, 최종태(消防正), 碩士學位 論文, 1985.
10. 「韓國消防行政의 發展方案에 關한 研究」, 김광수(서울消防本部), 碩士學位 論文, 1988.
11. 「自治消防」, 서울:大韓消防公論社, 1987, 1988.
12. 崔令成, 「韓國消防總覽」, 서울:安全出版社, 1971.
13. 金규정, 「行政學原論」, 서울:法文社, 1988.
14. 趙誠逸, 「消防戰術」, 서울:大韓消防公論社, 1983.
15. 內務部, 「韓國消防行政史」, 서울:正和印刷文化社, 1978.
16. 이상규, 「新 行政法論」, 서울:法文社, 1988.
17. 內務部, 消防學校, 「第1, 2, 3回 全國研鑽大會 優秀研究論文集」 수원:信文社, 1984, 1986, 1987.
18. 麗水市, 「麗水市 自治法規」, 麗水市.
19. 內務部, 「消防公務員 人事法令集」, 內務部
20. 孫在植, 「現代地方行政論」, 博英社, 1984.
21. 金亨培, 「地方自治論」, 啓明社, 1988.